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55
----------	-------

발의연월일 : 2025. 11. 18.

발 의 자 : 박덕흠 · 엄태영 · 임종득
김예지 · 이양수 · 고동진
박상웅 · 박수민 · 성일종
김정재 · 강대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시장개방 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현재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

도시소득과 농업소득의 편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의 59% 수준까지 떨어졌음. 이는 2002년 도농 소득 격차가 71.9%였던 것과 비교할 때, 20년 만에 격차가 12%가량 더 벌어진 것임.

이러한 도농 간 소득 격차는 지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의 격차까지 겹치며 농어촌 인구는 현재 소멸 위기 수준이며, 농촌마을의 열악한 인프라로 농촌지역 20~30대의 70%는 농촌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이에 많은 사람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떠나는 환경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기여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5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 연 24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신청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하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수급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주관) 이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이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층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매년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주민은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2장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제5조(지급대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② 수급권자는 신청연도의 직전 2년 이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금액을 정하되 연 240만원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중 100분의 80 이상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의 적용기간은 지급금액이 결정된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④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은 현금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결정 등

제7조(지급신청) ① 수급권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급신청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신청·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 제공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료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수급권(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하 “수급권”이라 한다)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 결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급의 결정 등)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한다.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의 결정 통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수급권자 사후관리

제11조(지급 정지)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인구감소 지역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외 체류 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치료감호 선포를 받고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급권의 상실) ①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해도 수급권자의 가구 구성원이 있을 경우,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가구 구성원의 최고 연장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소멸한 경우
2. 제12조 각 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환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농어업인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인구감소지역 기초연

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환수금의 고지·독촉 및 징수) ①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4조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지급신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제16조(수급권의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제10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지급신청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시효) 제14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9조(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장 벌칙

제20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구감소지역 기초연

금을 수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